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 길 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 길 영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는데,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후보자와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시의회(의장)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 또한,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시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